성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11년 6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개정에 따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고 조문변경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ㅇ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규정 신설(안 제17조의2)

-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
 ⇒ 고지서 1장당 150원
-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
 ⇒ 고지서 1장당 300원

ㅇ 인용조문 변경(안 제19조)

- 지방세법 개정(2010.12.27)으로 인용조문 변경
 (「지방세법」 제13조제3항 ⇒ 「지방세법」 제13조제5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근거 :

(1) 도 공문 : 지방세3법 및 시행령 개정내용 통보(도 세정과-52호, 2011.01.03) 및 조례개정 관련 시도 담당자회의 결과 통보 (도 세정과-2837호, 2011.02.24)

(2)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제4조(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) 및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제92조의2(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입법예고(2011.05.02 ~ 2011.05.23)결과 : 의견 없음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2(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 ①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제92조의2에 따라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군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.

1.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150원
2.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300원

② 제1항의 세액공제에 있어 1장의 고지서에 도세와 군세의 세목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도세를 우선 공제한다.

제19조 중 "「지방세법」제13조제3항"을 "「지방세법」제13조제5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9조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

제3조(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)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제17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7조의2(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 ①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제92조의2에 따라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군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. 1.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150원 2.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300원 ② 제1항의 세액공제에 있어 1장의 고지서에 도세와 군세의 세목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도세를 우선 공제한다.
제19조(감면 제외대상)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「지방세법」 제13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.	제19조(감면 제외대상) ---------- 「지방세법」 제13조제5항----------.